

제 호

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서

1. 기 관 명:

2. 소 재 지:

3. 기 관 장:

4. 과 정 명:

위 기관을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보건복지부장관 직인